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군

내 용

「의료급여법」 제3조,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보건복지부 「의료급여사업안내」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, 소득·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상실 통보서를 지체 없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.

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(2018. 2. 26. ~ 3. 16.) 중 울산광역시의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자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상실 처리 지연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○○○ 등 22명의 217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25,631,280원의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다.

[표] 의료급여 중지 처리 지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부담 현황

<단위 : 명, 원>

구/군	중지 지연	자격상실 이후 의료급여 진료횟수	중지 지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부담액
계	22	217	25,631,280
중구	4	11	15,358,500
남구	2	0	0
동구	6	69	1,372,550
북구	8	75	7,174,410
울주군	2	62	1,725,820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15,358,50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남구청장은

[시정] 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동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1,372,55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

바랍니다.

복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7,174,41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울주군수는

[시정]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기금 1,725,820원을 회수하고, 의료급여 수급 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